

기안용지

분류기호	205/51	(전화번호 267)	회필구정결사합
제1부서	제1부서장	제2부서	제2부서장
제3부서	제3부서장	제4부서	제4부서장
제5부서	제5부서장	제6부서	제6부서장
제7부서	제7부서장	제8부서	제8부서장
제9부서	제9부서장	제10부서	제10부서장
제11부서	제11부서장	제12부서	제12부서장
제13부서	제13부서장	제14부서	제14부서장
제15부서	제15부서장	제16부서	제16부서장
제17부서	제17부서장	제18부서	제18부서장
제19부서	제19부서장	제20부서	제20부서장
제21부서	제21부서장	제22부서	제22부서장
제23부서	제23부서장	제24부서	제24부서장
제25부서	제25부서장	제26부서	제26부서장
제27부서	제27부서장	제28부서	제28부서장
제29부서	제29부서장	제30부서	제30부서장
제31부서	제31부서장	제32부서	제32부서장
제33부서	제33부서장	제34부서	제34부서장
제35부서	제35부서장	제36부서	제36부서장
제37부서	제37부서장	제38부서	제38부서장
제39부서	제39부서장	제40부서	제40부서장
제41부서	제41부서장	제42부서	제42부서장
제43부서	제43부서장	제44부서	제44부서장
제45부서	제45부서장	제46부서	제46부서장
제47부서	제47부서장	제48부서	제48부서장
제49부서	제49부서장	제50부서	제50부서장
제51부서	제51부서장	제52부서	제52부서장
제53부서	제53부서장	제54부서	제54부서장
제55부서	제55부서장	제56부서	제56부서장
제57부서	제57부서장	제58부서	제58부서장
제59부서	제59부서장	제60부서	제60부서장
제61부서	제61부서장	제62부서	제62부서장
제63부서	제63부서장	제64부서	제64부서장
제65부서	제65부서장	제66부서	제66부서장
제67부서	제67부서장	제68부서	제68부서장
제69부서	제69부서장	제70부서	제70부서장
제71부서	제71부서장	제72부서	제72부서장
제73부서	제73부서장	제74부서	제74부서장
제75부서	제75부서장	제76부서	제76부서장
제77부서	제77부서장	제78부서	제78부서장
제79부서	제79부서장	제80부서	제80부서장
제81부서	제81부서장	제82부서	제82부서장
제83부서	제83부서장	제84부서	제84부서장
제85부서	제85부서장	제86부서	제86부서장
제87부서	제87부서장	제88부서	제88부서장
제89부서	제89부서장	제90부서	제90부서장
제91부서	제91부서장	제92부서	제92부서장
제93부서	제93부서장	제94부서	제94부서장
제95부서	제95부서장	제96부서	제96부서장
제97부서	제97부서장	제98부서	제98부서장
제99부서	제99부서장	제100부서	제100부서장

결기
1959. 11. 10
시장

5.19

서울특별시 신발성무허가전통 단속규정 제정

1. 종전의 단속지침은 일반 지시 통첩으로서 신발허이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단속업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체계화 하고 신발성무허가전통의 예방단속과 관련을 위한 제반 단속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별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신발성무허가전통 단속규정을 제정 시행 조치 합니다.

에규제 2/2호

가 제정 방향

- 1) 관계법과 관련하여 체계화
- 2) 단속대상과 수칙의 명시
- 3) 단속책임소관 부서의 명시
- 4) 단속체제 및 운영방법의 확립

나. 日誌 代價 : 別 誌

첨부 : 서울특별시 신광성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안) 1부

2부 附 錄



50

서울특별시 신발성무허가제도를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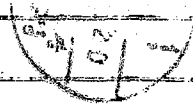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서울특별시회계장 号



서울특별시新莞生甄許可證物出束規規

장부심사	1975.5.16	제 31	호
심사자	김기재	장	장부심사관

第1條 (目的) 이 ^程規程은
방위동원과 根絶을 爲하
의 目的으로 制定한 爲하의
目的으로 한다.

新發生疫許可建築物의
諸般 因素業務을 合理
必要성 事項을 規定한 爲하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規程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次와 같다.

1. "新發生疫許可建築物, (이하 疫許可建築物) 이라 함은
1972. 12. 20 이후 國法에 許可된 建築된 建築物를
말한다.

2. "建築物, 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한 工作物中 木
及 石 등 堅固한 物을 指한다

3. "夜間建築物, (이하 夜間物이라 함) 이라 함은 建築法
제47條 및 國法施行令 제174條에서 環境에
建築物로서 附表1에 掲記한 物을 指한다.

4. "附屬施設, 이라 함은 建築物에 附屬된 施設로서
燈光塔, 물탱크, 빗물받이, 이차의 (차) ^{其他} 其他
이라 類似한 工作物로서 다른 時來의 對象이
되지 아니 한다

5. "行政措置建築物, 이라 함은 既存疫許可建築物에 對한
維持 對策의 一環으로, 行政目的을 遂行上 必要한

이와 관련하여 建築材料改良, 美化計畫, 建築物
移動整理, 夜以晝夜 其他行政上 必要의 措置要
求는 建築物 法令

6. 予防田東, 이라 함은 發許可建築物 築造時 本
의 施工 前에 以前에 田東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田東의 對象) 建築法 其他 建築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 申告, 承認 및 協議等을 行하여 本
建築 (新築, 增築, 改築, 再築 및 移築) 的인 建築物
은 田東의 對象에 屬한다. 이 範圍 內에 發許可
建築物의 (主要變更, 및 用途變更) 是하 建築
大修繕

第4條 (田東의 責任所管部署) ① 林野 (地盤) 官署
公園, 綠地, 道路, 河川, 集水敷地等 公共用地域
내의 發許可建築物에 對한 予防田東의 撤去 및
撤去 責任所管部署는 各 公共用地域의 管理部署에 依
하여 管掌한다. 이 撤去 作業에 對하여는 區, 出張所
主任 (建築) 課에 人員의 裝備을 支援 此外 處理
할 수 있다.

② 第1項 以外의 地域에 對한 發許可建築物의 予防
田東의 撤去 責任은 市長, 出張所長의 如히 撤去
責任은 區, 出張所長의 如하.

④ 行政措置 及 建築物에 對한 田東의 責任은 區, 出張所에 屬한다.

② 建築物의 大修繕 主要變更 及 用途變更의 田東
是正 責任은 建築許可部署에 對한 田東
業務 從事 職員의 撤去時에 是時 通報 하여야 한다.

第5條 (團東体制의 確立) 新落生技并可運物の 干防
團東, 撤去及 撤去業務의 内情의 遂行을 爲하
市, 區, 出張所 及 町, 支出所에 檢査 檢査 團東
体制을 確立 運營한다.

1. 本庁에 是 吳檢 巡察班을 設한다

2. 區, 出張所에 是 機動 巡察班, 及 撤去班을 設
하되 廢跡 地區에 是 必要의 所에 設置 運營 檢査한다

3. 町, 支出所에 是 地域 担当 巡察制의 統 班長 及 住民
申告制을 適用 運營한다.

第6條 (團東体制 運營 方法) 前條의 規程에 依하 團東
体制의 運營 方法은 次各號와 같다

1. 巡察班 運營 : 本庁 吳檢 巡察班 及 區, 出張所의
機動 巡察班 (사이카)은 廢跡 地區 巡察을 爲하
하되 吳檢 確認 其他 受命 事項에 對하 巡察 하되
其 狀況을 日誌에 記載 報告 檢査한다

2. 撤去班 運營 : 撤去班은 正規 職員을 班長으로
團東員으로 構成 하되 市長, 區, 出張所 長의 派理
指示 事項에 對하 撤去 報告 分에 對하 撤去 業務을
執行 하되 그 結果를 報告 檢査한다

3. 地域担当巡察制実施：市長又は出張所長が所属職員として 하여금 担当地域를 巡察케 하고 其結果를 巡察日誌에 記録하여 摘発事項은 出張所長에게 報知한다.

4. 住民申告制実施：市、区、村の民衆申告制의 適用 申告事項을 台帳에 登載하여 他業務에 優先하여 迅速히 處理하고 其結果를 申告人에게 回示한다.

第7條 (航空攝影業務處理) ① 市長은 航空攝影을 年 3回 (그중 特定地區는 1回) 實施하여 地上建築物의 變動狀況을 判別하고 그 結果를 別紙第1号書式에 依서 附圖判別 및 處理圖書에 略式現況圖를 添付하여 出張所長에게 處理指示한다.

② 出張所長은 前項의 指示된 事項을 市長에게 不遲 現地調査 報告하게 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調査結果를 出張所長은 許可建築物에 對하여는 必히 許可台帳 및 照會等으로 再確認할 것이며 其他 事項은 附圖判別 및 處理圖書에 依從 嚴格히 区分 記載하여 其結果를 指示日 로부터 1個月以內에 市長에게 報告한다.

④ 出張所長은 調査結果 摘出된 新發生被許可 建築物은 即時 撤去 措置하고, 撤去 事項을 市役所

⑤ 公共, 公用 및 公益建築物에 對한 檢査에 關한 規程에 關한 通報한다.

⑥ 行政措置違反建築物에 對한 市長 方針에 依한 處理한다.

第10條 (田東業務關係公務員의 檢査及 罰則) ① 新着生
發許可建築物 田東業務 檢査 職員 (田東業務員) 으로서
業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의 檢査를 爲한 檢査 및 檢査에 對한 檢査
에 對한 特別市 人事 規則에 依한 檢査에 依한 檢査를 爲한다.

② 田東業務 檢査 公務員의 職務 履行 分析 結果에
依한 檢査 結果를 別表 2에 依한 檢査 基準表에 依한
檢査 基準 公務員은 自體 檢査 基準에 依한 檢査를
受한다.

第11條 (違法建築主 檢査) ① 第3條에 依한 規定에
依한 田東의 對한 檢査에 對한 建築物을 建築한 建築主
에 對하여는 建築法 第2章의 (罰則 編)를 適用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告發 業務의 細部 處理
方法은 市長 檢査에 對한 建築者 通報 및 告發 要領에
依한다.

第12條 (代執行料其費用徵收) ① 第9條에 規程에
節次에 따라 新發生疑許可建物의 徵收者 代執行
者 境遇 其費用을 建築主로 徵收 할 수 있다
다만 建築主가 負擔能力이 없다를 認定者 境遇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代執行費用의 徵收方法에 節次에 關係法令에
따라 處理한다.

第13條 (報告) 區 出張所長은 指定號의 事項을
月報을 市長에게 報告한다

1. 新發生疑許可建物 處理狀況 (別附 2 号書式)

- 附 1) 田東手段別 處理現況
2) 發生地域別 現況
3) 構造及用途別 現況
4) 構造及規模別 現況

2. 疑許可建物 田東關係公務員 問責狀況

附 則

(1) (施行日) 이 規程은 1975. 7. 1 부터 施行한다

(2) (廢止規程) 從前의 新發生疑許可建物 田東에 對한
指定及通課은 이를 廢止한다.

3) (^{2)의}經路~~換程~~) 從前의 槓米 匯票에 依하여 處理
中의 것은 이 換程에 依하여 處理한다.

1/12

別表 /

1. 興行 至三 展覽會用 建築物

2. 工場用 建築物

3. 全天候施設

4. 倉 庫

5. 焚 材

6. 堆肥貯藏庫

7. 糞 帶

8. 農産物積置場

~~9. 小倉~~

10. 畜産用 及 水産用 補助施設

11. 生産物積置場

向 責 基 準

1. 予防回束頭撤去責任不尸行 (增築包含)

職責別	舊 式				新 式			備 考
	① 標 數 基 準			橋樑又規模	② 形 態 基 準 (1 標 當)			
	避 免	裁 除	遷 安		避 免	裁 除	遷 安	
統 計 當 (技師或專任)	5 棟	3 棟	2 棟	鐵筋或鋼骨 或木骨 桁架 柱梁 柱梁 以 上 橋	15 坪以上	15 坪未滿		
署 務 長	職員 3 名	職員 3 名 裁員以上	職員 3 名 遷安以上		職員 3 名	職員 3 名 裁員以上	職員 3 名 遷安以上	
科長 (技師科長)	職員 4 名	職員 4 名 裁員以上	職員 4 名 遷安以上		職員 4 名	職員 4 名 裁員以上	職員 4 名 遷安以上	

2. 撤去責任 (增築包含)

職責別	舊 式				新 式			備 考
	① 標 數 基 準			橋樑又規模	② 形 態 基 準 (1 標 當)			
	避 免	裁 除	遷 安		避 免	裁 除	遷 安	
相當職員 (署 相當)	5 棟以上	3-4 棟	2 棟	鐵筋或鋼骨 或木骨 桁架 柱梁 柱梁 以 上 橋	15 坪以上	15 坪未滿		
回束保長	15 棟以上	10 棟以上	5 棟以上		7 棟	5 棟	3 棟	
主任 (課長) 課長	45 棟	30 棟	15 棟		20 棟	15 棟	10 棟	
建設管理局長	45 棟以上				20 棟			

※ 不完全撤去頭撤去遷安已不撤去中平均 橋樑基準的若干以上

3. 虛偽報告：裁員以上

4. 期間算定：1 回航到期間基準中

※ 航到以依首發生區分已航到到航到基準中

20 元

...

...
...

...
...

1952年10月

<p>1. 1952年10月</p> <p>2. 1952年10月</p> <p>3. 1952年10月</p>	<p>4. 1952年10月</p> <p>5. 1952年10月</p> <p>6. 1952年10月</p>	<p>7. 1952年10月</p> <p>8. 1952年10月</p> <p>9. 1952年10月</p>
Empty grid area		

<p>10. 1952年10月</p> <p>11. 1952年10月</p> <p>12. 1952年10月</p> <p>13. 1952年10月</p> <p>14. 1952年10月</p>	<p>15. 1952年10月</p> <p>16. 1952年10月</p> <p>17. 1952年10月</p> <p>18. 1952年10月</p> <p>19. 1952年10月</p> <p>20. 1952年10月</p>	<p>21. 1952年10月</p> <p>22. 1952年10月</p> <p>23. 1952年10月</p> <p>24. 1952年10月</p> <p>25. 1952年10月</p>	<table border="1"> <tr> <td>26. 1952年10月</td> <td>27. 1952年10月</td> </tr> <tr> <td>28. 1952年10月</td> <td>29. 1952年10月</td> </tr> <tr> <td>30. 1952年10月</td> <td>31. 1952年10月</td> </tr> </table>	26. 1952年10月	27. 1952年10月	28. 1952年10月	29. 1952年10月	30. 1952年10月	31. 1952年10月
26. 1952年10月	27. 1952年10月								
28. 1952年10月	29. 1952年10月								
30. 1952年10月	31. 1952年10月								

카식목

100

100

